##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7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나경원 · 김성원 · 고동진

김선교 · 송언석 · 성일종

송석준 • 서천호 • 박준태

서지영 · 강승규 · 곽규택

이종배 • 구자근 • 박충권

조경태·백종헌·박수영

서일준 · 신성범 · 김미애

박덕흠 · 김민전 · 김장겸

김희정 · 조배숙 · 정성국

인요한 · 임이자 · 김종양

임종득 • 유용원 • 조승화

이헌승 • 이만희 • 엄태영

조은희 · 최보유 · 유상현

의원(39인)

###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9조의2를 위반한 등록신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후보자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2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0조(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무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 이전에 체 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 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
  - ③ 제57조제3항·제135조의2제6항 및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및 체납실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 납부 및 체납실적의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발생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4조의2(소멸시효) 이 법에 따
	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는 국가의 권리는 20년간 행사
	<u>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u>
	<u>소멸한다.</u>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8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8
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	
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	
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	
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	
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	
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	
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u>제47조</u>	제47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
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	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제49조의2를 위반한 등록신청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	
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	
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	

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 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⑤ (생 략) <신 설>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1. (생략)

· ⑨ ~ ⑸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후보자등록의 제한) 다
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하는 금액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하는 금액
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하는 금액
제52조(등록무효) ①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u>
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0조(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
  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
  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 역야 하는 금액
  -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하는 금액
  - 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하는 금액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 이전에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
  - ③ 제57조제3항·제135조의2제 6항 및 제265조의2제3항에 따

라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 서장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및 체 납실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 납부 및 체납실적의 통지, 인터 넷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